

해외에서의 콘텐츠 불법침해 유형의 분석과 대응방안

| 김성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_법무법인 덕수 파트너 변호사 |

1. 들어가며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유명해진 대표적인 침해 사이트는 “누누(NOONOO)티비”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침해자들은 2021년경 위 “누누”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서버 위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약체’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의 월 이용자 수는 2023. 2.를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조회 수는 18억 1,200만 회, 그리고 이로 인한 업계의 피해액은 약 4조 9,000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¹⁾

위 “누누티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구글을 통한 누누티비 검색결과 제한 조치 등을 의결하여 침해 차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누누티비의 URL(인터넷 주소) 차단에 나섰고, 국내 OTT 업체들과 방송사 등은 2023. 3.경 ‘영상저작권보호협약체’를 발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²⁾ 부산경찰청 역시 누누티비 운영진 검거를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³⁾

이에 누누티비 운영자들은 2023. 4. 16.경 누누티비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다. 그러나 위 운영자들은 사이트 폐쇄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취지를 공지했다.⁴⁾ 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

누누티비 뿐이 아니다. 이렇듯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법망을 피한 채 버젓이 조직적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2018.경 ‘밤토끼’로 대표되는 조직형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운영자와 조직망이 검거되는 일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 누누티비 등 제2의 ‘밤토끼’를 넘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침해 유형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

1) 동아일보, 누누티비 논란에도 “다른 데서 보면 돼”...5조원대 피해 육박, 2023. 3. 30.자 기사.

2) 아이뉴스24, 15억뷰 누누티비 경찰 수사로 잡을 수 있을까, 2023. 3. 22.자 기사.

3) 아주경제, 부산경찰청, 조회수 15억회 ‘누누티비’ 수사 착수, 2023. 3. 16.자 기사.

4) 연합뉴스, 누누티비, 폐쇄 선언 사흘만에 번복...“시즌2 서비스”, 2023. 4. 19.자 기사.

반면, 침해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이트 운영자의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은 매우 어렵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워낙 많은 국가에 침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산재해 있고, 때문에 운영자의 소재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더라도 현지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검거가 불가능하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챈 운영자들은 검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서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계속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해외에서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조직적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의 침해방식에 대한 분석⁵⁾

가.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한 침해 사이트 개설

1)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의 개념과 작동원리

현재 조직적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양산하고 있는 사이트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원래 이 ‘CDN’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음악파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상황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해 그 속도가 느려질 때, 네트워크 주요 지점에 설치한 전용 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한 후, 이용자와 가까운 곳의 서버가 이를 내보내서 인터넷의 전송 속도 등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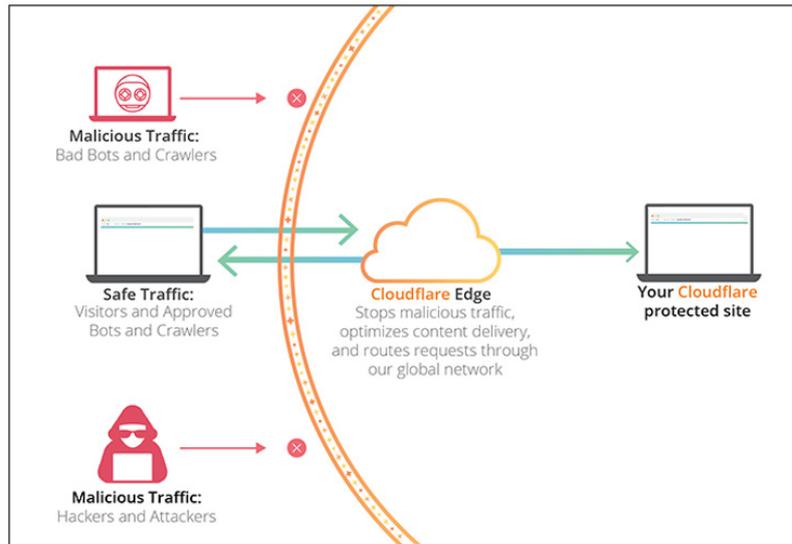
CDN 서비스의 대표적인 제공자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라는 업체가 있다. 이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3. 4. 현재 전 세계에 약 3,200여명의 직원과 20여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00여개국 285개 도시에 네트워크 전용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2022. 11.경에는 한국에도 지사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다.⁷⁾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으로서, ‘디도스 공격 등 악의적인 트래픽 (Malicious Traffic)으로부터 고객들의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⁸⁾ 즉 CDN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구축한 서버 대신 위 클라우드플레어 등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고, CDN 업체들은 자신의 고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더라도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방어하고 안정적인 서버 운영망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CDN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실제 개설한 서버는 위 클라우드플레어 등 CDN 업체가 운영하는 서버의 뒤쪽에 숨겨지게 되고, CDN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IP를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면에서, CDN 서비스는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5) 이하 내용은 본 저자가 집필인으로 참여한 보고서, 이영욱, 김성주,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방안’(2019), ‘Ⅲ. 저작권침해의 메커니즘 분석 및 검토’ 부분을 인용 및 참조하였음.
 6) 홍범석 외, ‘CDN 서비스의 현황 및 이슈(2008)’,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호, 3면.
 7) 바이라인네트워크, 한국 직접 진출한 클라우드플레어 “CDN-업 보안 넘어 ‘제로트러스트’ 시장 1인자 되겠다”, 2023. 3. 7.자 기사.
 8) <https://developers.cloudflare.com/fundamentals/get-started/concepts/how-cloudflare-works/>, 2023. 4. 24. 검색.

[그림]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CDN 서비스 업체의 서버 보호기제 작동원리⁹⁾



2)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CDN 서비스를 악용하는 방법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CDN 서비스가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조직 내지 업체들(이하 ‘침해자들’이라 한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침해자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접속하는 자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대량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광고료 등의 이익을 얻는다. 이용자들이 많을수록 침해 사이트에서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CDN 서비스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트래픽 문제가 발생해도 균질적인 인터넷 속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 탁월하다. 침해자들이 CDN 서비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CDN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래 IP를 드러내지 않는다. 수사당국이 침해자들의 웹사이트를 추적하다 보면 1차적으로 CDN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위치가 드러나는 구조다. 침해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CDN 서비스를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악용한다. 즉 조직적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도 클라우드플레어의 서버 보호기능을 악용하기 위해 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운영자의 실제 IP를 감추고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침해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한 후, CDN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서버를 전면에 내세워서 침해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침해자들의 실제 서버 위치와 침해자들 신원을 감춘 채 대규모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업체와 수사당국이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소재를 파악해보려 해도, 엉뚱하게도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가 또는 지역의 IP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가령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침해 사이트를 추적하면, ‘클라우드플레어’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IP만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침해자들의 신원과 서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⁹⁾ <https://support.cloudflare.com/hc/en-us/articles/205177068-Step-1-How-does-Cloudflare-work->

그런데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침해자들과 관련한 신원 등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는다. 일례로, 위 클라우드플레어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서버 공금을 중단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자 2016. 9.경 입장문을 내어, “클라우드플레어는 권리 침해 혐의를 받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며, CDN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웹사이트 로딩을 조금 더 빨라지게 하는 자동화된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중개업체 중 하나”로서 “권리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¹⁰⁾

결국 CDN 서비스 업체들의 뒤에 ‘숨어 있는’ 침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서비스 업체들이 신원정보 제공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른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신원을 공개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CD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IP 추적방법 및 한계점

가) 법원의 명령을 통한 추적 정보의 공개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CDN 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즉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의 신원 파악 등을 위한 사법조치가 가능하다.

가령 미국 뉴욕주 법원의 2016. 10. 20.자 명령에 따르면, CDN 서비스 제공자가 비록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침해자인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¹⁾

또한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2019. 1. 28. CDN 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의 삭제 명령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도쿄지방법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정보 사이트에 업로드된 일러스트의 삭제 등을 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보 사이트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게도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러스트 삭제 및 대상 사이트 관리자 정보 공시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¹²⁾

이탈리아의 밀라노 법원 역시 2020. 10. 5. CDN 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이용허락 없이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¹³⁾

이처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침해사실 입증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 CDN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CDN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나라의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CDN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는 방법이 실제 불법사이트 침해자의 추적에 유의미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10) 원게재글: <https://yro.slashdot.org/story/16/09/28/2044212/cloudflare-we-cant-shut-down-pirate-sites> 2023. 4. 24. 검색.

11)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저작권 동향(2016년) 제22호.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도쿄지방법원, 정보 사이트의 전송을 지원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명령’, 저작권 동향(2019) 제2호.

13)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저작권 동향(2020) 제20호.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를 감수해야 한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형 업체들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현지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만약 침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검거까지는 요원한 경우가 많다. 가령 실제 침해자가 해당 법원이 소재한 국가가 아니라 제3국에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때에는 그 제3국의 사법당국 협조를 얻거나, 제3국의 현지법에 따른 별도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 서버를 추적하기 위해서만 최소 2차례 이상의 소송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나)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CDN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협회, 회사, 개인 등을 포함함)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가령 클라우드플레이어의 경우 "신뢰기관보고(Trusted Report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기관으로부터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침해가 의심되는 해당 서버 주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IP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침해자들이 CDN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와 같이 '본인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침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입 이메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 없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면 그만이다.

또한 CDN 서비스 제공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에 대하여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동시에 해당 고객에 대하여도 정보의 제공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있다. 때문에 침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피해자 또는 수사당국 등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CDN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

나. 해외 ISP 수사 교체를 통한 추적 회피

침해자들은 해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업체들을 수시로 갈아타는 수법을 이용하면서 침해를 이어가기도 한다. 해외 ISP 업체들 중에는 유명회사도 많고, 이들 업체도 나라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ISP 권리를 양수도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ISP 업체를 통한 침해자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도메인 대량 구입을 통한 불법사이트 양산

CDN 서비스를 통한 서버 은폐 방식의 침해가 성행하기 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침해방식이다. 즉,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수십 개 이상 대량으로 미리 구입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도 전형적인 침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침해자들은 우선 콘텐츠를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하고, 미리 구매해 둔 도메인 기반 사이트에 이를 게시한다. 이후 SNS 등을 통해 무료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불

법 도박 사이트와 성인 사이트 광고배너 등을 노출시키는 것을 대가로, 위 광고 의뢰 업체들에게서 수익을 챙긴다.¹⁴⁾

침해자들은 해당 인터넷 주소의 계정이 폐쇄되거나 검색결과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리 구매해 둔 새로운 도메인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침해 사이트를 만든다. 가령 ‘누누티비1.COM’의 접속이 차단되거나 폐쇄되면, ‘누누티비2.COM’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서 불법 침해를 이어나간다. 누누티비 사이트를 차단해도, 제2의, 제3의 누누티비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이트 도메인 구입 비용은 연간 1~3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개설과 대체도 쉬운 반면 단속은 요원하다. 국내의 수사기관이 해외의 운영자와 서버 소재를 파악하면, 해당 국가의 관련 수사부서와 공조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받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데, 범죄인 인도 자체가 중범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내로 운영자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 불법적인 유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료로 게시한 후 불법도박 내지 성인사이트 등의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일부 침해 사이트들의 경우, 콘텐츠를 복제한 후 마치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저작물인 것처럼 게재하고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료 결제를 유도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

해외의 일부 침해 업체들은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후, 무단 번역·복제된 작품을 위 앱에 게재하면서 사용자들의 앱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한 벤처회사가 2014.경 네이버, 다음 등에서 연재 중인 여러 웹툰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웹툰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자 약 두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다.¹⁵⁾

바. 구글드라이브를 통한 불법복제물 판매

최근에는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콘텐츠 불법복제물들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저장한 다음, SNS 등을 이용하여 이를 홍보한 후, 이에 유입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글드라이브 계정을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 과정에서 종종 확인되는 침해 유형이기도 하다. 이들은 구글드라이브에서 월 10달러 내외의 비용만 내면 상당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침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14) 박석환 외,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40~41면.

15) 디지털타임스, '잘나가던 웹툰 앱, 2달만에 서비스 중단 이유가...'. 2015. 1. 28.자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2902100931746001

3.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가. 대응 방안의 유형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적어도 해당 운영자가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일 것이다.

피해자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침해 현지 주소 등을 파악한 후 현지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방안이고(일명 '사적 구제 모델'), 다른 하나는 현지 정부 당국의 공조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일명 '정부 또는 기관 간 공조모델'). 구체적인 방안과 한계점을 아래에 기술한다.

나. 사적 구제 모델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침해자에 대해 현지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해외 각국에는 침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절차가 존재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¹⁶⁾ 민사구제에 관해서는 저작권자는 법원의 '침해예방 및 침해정지 조치'와 '손해배상명령'을 얻어낼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불법복제물 및 복제에 사용된 도구의 압류, 폐기 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미 발생한 손해액과 앞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배포하는 행위,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중국의 경우 민사적 침해에 대한 구제로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위법소득, 복제품 위법활동을 위한 물품의 몰수 등이 가능하며, 행정제재로서는 행정처벌 부과, 위법소득 및 불법 복제품의 몰수, 소각, 벌금의 부과 등이 있다. 형사관계법령에 따른 고소가 있으면 저작권과 저작권접권 침해 정도가 엄중할 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015년 형법에 "불법 정보네트워크 이용죄(非法利用信息网络罪)와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가 추가되어 온라인 범죄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되었고, 처벌의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컨대 침해자나 침해 사이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이 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구제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2019.경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방안'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집필을 위해 조사를 해본 바로는, 당시 콘텐츠 업체들 중 해외에서 직접 변호사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된 이유는 결국 '현지 사법대응을 하고자 해도 비용과 시간, 그리고 현지 법체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였다.¹⁷⁾

특히 CDN을 이용하는 침해자들의 경우 CDN 업체의 뒤에 숨어서 신원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신원 파악을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피해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중도에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16) 이하의 해외 법적 및 구제수단 내용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해외저작권정보+'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init.do>
 17) 이영욱, 김성주,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방안(2019), 55면 참조.

형사상 조치도 마찬가지다. 현지 사법당국에 개인 또는 업체가 수사를 의뢰하려고 해도, 각 국가별 수사 진행 방식이나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고, 집행 절차를 알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막상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침해자들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나 개인 저작권자가 사적 구제를 받으려면 현지 사법당국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나 시간 및 현지 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 정부 또는 기관 간 공조모델

정부 또는 기관 간 공조모델은 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방식이기도 하다.¹⁸⁾ 대규모 조직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검거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므로, 정부 또는 기관에서 각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법 공조 체제를 갖추어달라는 것이다.

기관 간 공조모델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일본의 'CODA(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가 있다. CODA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권 관련단체 및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의 해적판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직이다.¹⁹⁾

이들은 해외에서 해적판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수집·조사연구, 일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일본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 등에 기여하는 정보의 수집·분석, 해외에서 해적판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집행 추진, 해적판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외규제기관 등과의 연계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부, 산업단체, 사업자와의 대화, 해외의 불법복제방지 및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일 기업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현지정부기관, 산업단체, 사업자 등과의 관계구축을 수행하고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가령 중국의 국가판권국 등 중국정부와의 대화루트를 'CODA 베이징 센터'를 통해 구축하고 저작권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라. 국내 기관 및 정부 등의 대응 현황

우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8. 11.경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개설한 후, 콘텐츠 장르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정보를 분석해 시정권고(경고, 삭제·전송중단 등) 및 민관협력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⁰⁾ 이와 더불어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심의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그리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²¹⁾

18) 이영욱, 김성주, 위 보고서, 59면.

19) 이하, 'CODA'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술은 이영욱, 김성주, 위 보고서, 61면 이하 부분을 인용함.

20) <https://www.kcopa.or.kr/lay1/S11T10C222/contents.do>, 2023. 4. 24. 검색.

21)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8면.

국내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공조 관련 민간 기관으로서는 COA(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해외저작권진흥협회)를 들 수 있다. COA는 2018.경 정부와 공공의 대응만으로는 해외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간 주도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²⁾ 이 기관은 해외 콘텐츠 유통 현황 조사 및 침해 실태 조사, 국내외 저작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2023. 3. 28.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였다.²³⁾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과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공조가 강화되고, 무엇보다 해외 정부 또는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제언

이상과 같이 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침해 대응 방안을 살펴본 바로, 저작권보호원 등을 통한 침해 대응 체계가 일응 마련되고, 민간 단위에서의 침해 대응 협의체가 발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침해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와 저작권 침해 관련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국가에 관련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여러 직간접적 방법으로 관련 법규 정비나 여론 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처럼 민간협의체나 민간 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기반 CDN 업체, 결제대행 업체, ISP 업체들에 대해서도 정부 또는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업체들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 침해대응기관의 정비 및 일원화

많은 콘텐츠 저작권 피해업체들은 국내의 저작권 침해대응 경로에 대한 정비 또한 요구하고 있다.²⁴⁾ 가령 한 기관은 검색결과 제한 조치만 수행하고 다른 한 기관에서는 차단 조치만 수행하는 식으로, 현재 콘텐츠 불법침해와 관련한 대응 절차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 콘텐츠 피해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확인 시 신속하게 접속 차단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²⁵⁾

22) 해외저작권진흥협회(COA), '민간주도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2면.

23) KBS,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한다"…범부처 협의체 발족, 2023. 3. 28. 자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6897>

24) 이영욱, 김성주, 위 보고서, 89쪽 이하 부분 참조.

25) 박석환 외, 전계서, 114면 참조.

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지원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개인 저작권자들에 대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가령 해외 현지에서 사법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각국의 현지 저작권 관련 전문 로펌 풀(POOL)을 보유하면서,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로펌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현지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바우처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제도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권리행사 시 가장 난처한 부분은 바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확인’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 발생하여 일정한 권리등록의 형식과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때문에 각국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등의 증거’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서 법적 절차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저작권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그 정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와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대응에 있어서 난관과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침해에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각종 제언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고안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보고서, 논문 등

박석환·김숙·이민영·서희정·강민지, '만화 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이영욱, 김성주,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9.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저작권 동향(2016년) 제22호,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도쿄지방법원, 정보 사이트의 전송을 지원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명령', 저작권 동향(2019) 제2호,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저작권 동향(2020) 제20호, 2020.

해외저작권진흥협회(COA), '민간주도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홍범석 외, 'CDN 서비스의 현황 및 이슈(2008)',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호, 2008.

언론기사

동아일보, '누누티비 논란에도 "다른 데서 보면 돼"...5조원대 피해 육박', 2023. 3. 30.자 기사.

KBS,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한다"...범부처 협의체 발족, 2023. 3. 28.자 기사.

디지털타임스, '질나기던 웹툰 앱, 2달만에 서비스 중단 이유가...', 2015. 1. 28.자 기사

연합뉴스, '누누티비, 폐쇄 선언 사흘만에 번복... "시즌2 서비스"', 2023. 4. 19.자 기사

아이뉴스24, '15억부 누누티비 경찰 수사로 잡을 수 있을까', 2023. 3. 22.자 기사.

아주경제, '부산경찰청, 조희수 15억회 '누누티비' 수사 착수', 2023. 3. 16.자 기사

비리온네트워크, '한국 직접 진출한 클라우드플레어 "CDN-앱 보안 넘어 '제로트러스트' 시장 1인자 되겠다"', 2023. 3. 7.자 기사.

• 본 내용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